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9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오 *란	오 *란 1971-05-16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(대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8-27
이 *일	이 *일 1979-12-16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(창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8-27
김 *석	김 *석 1974-05-14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길 (창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8-27